

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09년 3월 25일

국 무 총 리 한 승 수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이 달 곤
장 관
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9554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)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, 주식소유현황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3항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6항 단서 중 “기업결합으로서”를 “기업결합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서”로, “30일 이내”를 “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방송위원회”를 “방송통신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”을 각각 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第9條(相互出資의 금지 등) 내지”를 “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, 제10조의2(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)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第9條(相互出資의 禁止 등)第1項·第3項, 제10조(出資總額의 제한)제1항”을 “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제1항·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第9條(相互出資의 禁止 등), 第10條(出資總額의 제한)第1項”을 “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第9條(相互出資의 禁止 등), 第10條(出資總額의 제한)第1項”을 “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”로, “第11條(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)”를 “제11조(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), 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

결 및 공시)부터 제11조의4(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)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

제17조제1항 중 “第9條(相互出資의 禁止 등) 또는 第10條(出資總額의 制限)第1項의 規定에”를 “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를”로 한다.

제17조의2,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정부투자기관”을 각각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5항제5호 중 “부당지원행위”를 각각 “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”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제9조(상호출자의 금지 등)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

제67조제6호 중 “제16조(시정조치 등)제1항, 제17조의2(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)제1항”을 “제16조(시정조치 등)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9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 또는 제11조의3(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)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함에 있어”를 “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부터 제11조의4(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)까지의 規定에 따른 公示를 하는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

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0조(양벌규정) 법인(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4 및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특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

및 주요내용

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이고,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